

'95 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동의안

심사 보고서

1995년 10월 9일

총무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9월 27일 삼척시장 제출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1995년 9월 27일
- 다. 심사일자 : 제8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95.10.9) 심사 ·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이용문)

가. 제안이유

- 시책추진에 필요한 시유재산의 신규매입과, 교환처분을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공설운동장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편입용지 18필지 23,946㎡를 취득하고,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토지 6필지 1,549.8㎡와 건물 1동 116.3㎡를 상호 교환처분코자 함.

나. 주요골자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의표시			추정가액 (공시지가)	소유자	사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교동 242-1외 17필지	대, 전, 수로, 임야	23,946 (편입지적)	104,472	김유복 외12인	공설운동장 기반 시설확충 편입부지

나. 주요골자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공시지가)	소유자	사 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취득	교동 242-1외 17필지		23,946	104,472	김유복 외12인	공설운동장 기반 시설확충 편입부지
교 환	소 계	토지 6필지	1,549.8	186,313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
	교동 598-9	도로	3,007중 96	39,360	삼척시	교동파출소로 사용 (기의결 76 m ²)
	근덕 교가 651-15	대	27	4,320	삼척시	근덕파출소로 사용
처 분	노곡 하월산 144-2	대	1,754 (230/630)	4,516	삼척시 외3	노곡파출소 관사로 사용
	당저동 35-4	대	300.1	50,717	삼척시	관사부지로 사용
	당저동 35-5	대	315.1	53,252	삼척시	"
토지	당저동 30-8	대	171.6	34,148	삼척시	"
	당저동 30-8	건물	116.3	8,489	삼척시	관사로 사용
교환 처분 건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홍성용)

- 공설운동장 기반시설확충 편입용지 매입건은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삼척공설운동장의 기반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원도민체전등 각종 대규모체육대회 유치시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주차공간 및 체육시설확보와 공설운동장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는 통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국공유 상호점유재산에 대한 교환의 건은 지.파출소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경찰청으로, 경찰청 소유인 여성회관부지를 우리 삼척시가 교환 처분하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중 국공유 상호 점유대상중 경찰청과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중 토지 6필지, 1,549.8㎡와 건물 1동 116.3㎡는 '95. 5.16일 제6회 임시회시 3차 변경동의안에 누락되었거나 지적이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교환 처분하게 된 것으로,

현재 지.파출소건물이 점유하고있는 시유재산과, 여성회관건물이 점유하고있는 경찰청소유 부지의 상호교환 처분은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도 필요하며 다만, 경찰청소유 여성회관 부지 매입 추정가액이 7억4천만원, 지.파출소 점유 매도 추정가액이 3억8천만원으로써, 시비 3억6천만원의 추가지출이 예상되는바, 정확한 감정가액 산정으로 시비손실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V.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김진형의원, 임동순의원)

- 도민체전유치를 위해서는 공설운동장 기반시설확충은 필요한 사항이며, 산업대학교 및 기업체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찬성함.

나. 반대토론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